

농업계 동향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통합

- 정부는 산업 및 생활 기반시설 등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2007. 4. 17)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농림부는 대체입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계획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 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2009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법을 안을 10월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농림부는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을 새로이 정립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추진해온 면단위 균일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업대상지역만 다를 뿐 사업내용이 유사한 유사·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을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농림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전부개정법을 안을 2007. 10. 23.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안 제3조 제7호~8호, 제21~제22조, 제35~제38조).
 - 둘째,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제3항, 제41조).
 - 셋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 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3조 제9호, 제45조~제47조)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

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제2항, 제10조, 제50~제52조, 제54조~제55조).

- 다섯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함(안 제14조)
- 여섯째,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2항)

■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농림부는 “동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부)

특성화 농고 육성을 위해 농림부·교육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농업계고교, 우수 농업인적자원 배출의 산실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농림부·교육인적자원부·8개도 교육청, MOU체결
농업계고교가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따라 "농업에 대한 비전과 소양을 갖춘 예비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 본격 육성된다.

농림부(임상규 장관), 교육인적자원부와 8개도 교육청은 10.30(화), 서울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농업·식품산업분야 특성화 고교 공동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약정(MOU)을 체결하고 농업·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수립된 특성화 고교 육성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특성화전문계고교육성계획 : 산업별 핵심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부·산자부 등 6개 부처 2개청이 총 104개 전문계 고교 운영 참여

이번 체결하는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 MOU에 의하면,

농림부는 특성화 농고의 선정, 특성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원 국내외 현장 연수, 졸업생의 창업·취업·진학 등 진로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맡게 되며, 교육청은 특성화 농고를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농식품전문가로 교장 공모 및 산학겸임교사 활용 확대, 전국단위 우수학생 모집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림부와 교육청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MOU에 따라 2009년까지 8개 지역 10개 농고의 특성화교육 활성화 및 전체 농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별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및 인턴십, 해외연수, 창업동아리, 특성화 교과개발 등에 24천만 원씩 지원하며 농고교사 연수, 영농학생경진대회 등에 총 77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현장체험농고(10개) : 수원농생명과학고, 여주자연농고, 흥천농고, 보은자연고, 청주농고, 공주생명과학고, 김제자연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연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은 특성

화 농고 성과를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특성화 농고를 국립화하여 농림부가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현행) 시·도 교육청 운영 공립학교 → (변경)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 농림부 위탁 운영

2010년 국립화할 특성화농고는 2009년 중 각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대표학교 9개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MOU체결행사에는 10개 농고 교장과 한국농업대학장, 농업인단체장 및 농산업체대표 등도 참석하여 농고 졸업생의 영농정착, 농과대 진학 및 농산업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고교육을 농업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을 원하게 확보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중 농림부가 가장 먼저 MOU를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부처에 파급되어 MOU체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부〉

한·U FTA 제3·차 협상 동향과 쟁점

7월에 열린 한·U FTA 제2차 협상 이후 두 차례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어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3차 협상(9. 17.~9. 21.)과 제4차 협상(10. 15.~10. 19.)에서도 이견을 충분히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상품 양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부문별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등이 주요 논쟁 사안이었다. EU

는 교역액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3년 내에 조기 철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 양허안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교역액 기준 68%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한·미 FTA의 양허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농산물 양허 수준이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에 대한 교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과 농업 부문의 민감성 등을 들어 반론을 펼쳤다.

농산물 보호 장치와 지리적 표시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농업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한 반면, EU는 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 세이프가드를 제안하였다. 또한 EU가 제3차 협상에서 포도주, 위스키 등 주류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리적 표시제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되는 품목이 있지만 그 수가 2007년 10월 현재 38개에 그쳐 피해가 월등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동물복지를 포함한 위생 및 검역조치 분야 협상은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11월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협상에서 양허 수준, 농산물 개방 폭, 지리적 표시제 등에 관한 논의의 진전 여부가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